

##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용제외 추가 약정서

###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

성명		생년월일	
----	--	------	--

본인은 \_\_\_\_\_년 \_\_\_\_\_월 \_\_\_\_\_일 체결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합니다.

#### 제1조 (이용제외 약정)

본인은 공인인증서 발급, 재발급, 타행/타기관 등록, 1일 누적 100만원 이상 자금이체 거래 시 귀행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의 본인확인 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( )로 인하여 이용하지 않고자 본 추가약정을 체결합니다.

#### 제2조 (보안매체의 사용)

본 추가 약정 이후에는 귀행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시 OTP(One Time Password :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)를 사용하기로 합니다.

이후 OTP 이외의 다른 보안매체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본 추가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귀 행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합니다.

#### 제3조 (신고의무)

본인은 제1조에 기재한 불가피한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은행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귀행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합니다. 동 신고의 지연으로 인하여 전자금융사기 피해에 의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.

#### 제4조 (유의사항 및 책임)

은행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전자금융사기 피해에 의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.

본인은 위 추가약정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주요내용(접근매체의 관리, 손실부담 및 면책 등)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므로 본 약정을 체결함을 확인합니다.

20 \_\_\_\_\_년 \_\_\_\_\_월 \_\_\_\_\_일

신청인 \_\_\_\_\_ (인)

법정대리인 \_\_\_\_\_ (인)

※본 추가 약정은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, 해외이용 고객은 영사확인 위임장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### <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주요 내용 >

#### 제6조(접근매체의 관리)

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, 사용위임 또는 양도·담보 제공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,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
#### 제20조(손실부담 및 면책)

① 은행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,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,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합니다. 다만,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

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합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.

1. 천재지변, 전쟁, 테러,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, 화재,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
2.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
3.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
4.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,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
5. 이용자가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·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
  - 가. 누설·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
  - 나.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
6. 법인(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)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